

#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2022년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CREATIVITY  
INSPIRED  
HYOSUNG  
HYOSUNG HEAVY  
INDUSTRIES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목 차

<b>1. 개요</b> .....	<b>1</b>
<b>2. 기업지배구조 정책</b> .....	<b>2</b>
<b>3. 주주</b> .....	<b>4</b>
1) 주주의 권리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b>4. 이사회</b> .....	<b>26</b>
1) 이사회 기능	
2) 이사회 구성	
3) 사외이사의 책임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5) 이사회 운영	
6) 이사회 내 위원회	
<b>5. 감사기구</b> .....	<b>59</b>
1) 내부감사기구	
2) 외부감사인	
<b>6. 기타 주요 사항</b> .....	<b>71</b>
<b>&lt;별첨1&gt;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b> .....	<b>74</b>
<b>&lt;별첨2&gt; 기업 내부 규정</b> .....	<b>75</b>

1) 기업명 :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2) 작성 담당자

(정) 성명 : 송기호 직급 : Performance Leader(PL) 부서 : 자금팀

전화번호 : 02-707-6140 이메일 : khsong@hyosung.com

(부) 성명 : 안은비 직급 : Professional(Pro) 부서 : 자금팀

전화번호 : 02-707-6133 이메일 : eunbiahn@hyosung.com

3) 작성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4) 기업 개요

최대주주등	(주)효성 외 13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54.47%
		소액주주 지분율	44.52%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 제품	변압기, 차단기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기업집단명	효성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2022년	2021년	2020년
연결 매출액	35,101	30,947	29,840
연결 영업이익	1,432	1,201	441
연결 계속사업이익	291	765	▲193
연결 당기순이익	291	765	▲193
연결 자산총액	46,935	40,227	37,035
별도 자산총액	34,862	30,344	29,296

## 1) 기업지배구조 정책 현황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

당사는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효성이 영위하는 사업 중 중공업, 건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가치체계에 따라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글로벌 일류 기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를 당사의 원칙과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31일 현재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가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물색하여 추천합니다. 사외이사는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별도의 결의과정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되는 참고자료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고, 주주총회 당일 주주의 승인을 받아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경영 기본 방침과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경영기관으로,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정관 제31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기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사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심의·제한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는 이사회의 전략적인 판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의 사업에 대한 사내 최고 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 또한 필요합니다. 사외이사는 재무, 법률, 기술, 마케팅 부문 등의 전문가로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사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yosungheavyindustries.com/kr/ir/charter.do>)와 사업보고서 (<http://dart.fss.or.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2) 지배구조의 특징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통한 투명성 강화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작성기준일 기준 57.1%, 보고서 제출일 기준 62.5%)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킴으로써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사와 회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법과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일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를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2)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당사는 이사회 내 총 3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회사 경영방침 및 투자 등에 관한 사항 등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 (3) 다양한 배경의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이사회 전문성 강화

당사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기 위하여, 이사진이 특정 배경에 편중되지 않도록 재무·법률·기술·마케팅 등 여러 전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금융·회계·재무분야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업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주주의 권리

### (핵심원칙 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1)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

####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가.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총 3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기간 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 사항

구분	제5기 정기주주총회	제4기 정기주주총회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3년 02월 23일 (목)	2022년 02월 24일 (목)	2021년 02월 24일 (수)
소집공고일	2023년 02월 23일 (목)	2022년 02월 24일 (목)	2021년 02월 25일 (목)
주주총회개최일	2023년 03월 16일 (목) 오전 11시	2022년 03월 17일 (목) 오전 11시	2021년 03월 18일 (목) 오전 11시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주총회 21일전	주주총회 21일전	주주총회 21일전
개최장소/지역	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	-	-

###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 사항

구분		제5기 정기주주총회	제4기 정기주주총회	제3기 정기주주총회
세 부 사 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7명 중 2명 출석 (사내이사 1명/사외이사 1명)	4명 중 2명 출석 (사내이사 1명/사외이사 1명)	5명 중 2명 출석 (사내이사 1명/사외이사 1명)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여부	3명 중 1명 출석 (대표감사위원)	3명 중 1명 출석 (대표감사위원)	3명 중 1명 출석 (대표감사위원)
	주주발언 주요 내용	발언 주주 : 개인주주 2명 발언 요지 : 의안에 대한 찬성 발언	발언 주주 : 개인주주 2명 발언 요지 : 의안에 대한 찬성 발언	발언 주주 : 개인주주 3명 발언 요지 : 의안에 대한 찬성 발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주주들에게 제공된 정보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 등이며, 회의 목적사항은 보고사항(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과 부의사항(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정관변경,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으로 분류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소집공고 서류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이사회 출석률 및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의 활동내역 포함)과 사외이사 보수현황을 기재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사항으로서 단일거래규모가 자산 또는 매출액의 1% 이상인 거래 및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총액이 자산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인 거래내역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 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 제공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전반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사외이사 보수현황,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업계의 현황과 회사의 현황, 시장점유율 등도 기재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에서는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개최일의 2주 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함과 동시에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일 약 3주전 소집결의를 하여, 최소 20일에서 최대 21일 전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ESG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산 및 이사회 일정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업무 프로세스 정비 등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궁극적으로는

ESG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최대한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의 관심과 참석률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 개최되었던 주주총회의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및 주주 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5기 정기총회 (최근년도)	제4기 정기총회	제3기 정기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3년 03월 24, 30, 31일	2022년 03월 25, 30, 31일	2021년 03월 26, 30, 31일
정기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6일	2022년 03월 17일	2021년 03월 18일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예	예	예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전자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예	예	예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 개최되었던 주주총회 안건 별 찬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안건 별 찬반 내역**

정기		제 4기 주주총회				2022.03.17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sup>1)</sup> (①)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sup>2)</sup> (A)	찬성 주식수 (B) <sup>3)</sup>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sup>4)</sup> (비율, %)	
제1호 의안	보통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9,311,741주	5,988,321주	5,862,344주 (97.90%)	125,977주 (2.10%)	
제2호 의안	제2-1-1호	보통	사내이사 양동기 선임의 건	가결	9,311,741주	5,988,321주	5,967,595주 (99.65%)	20,726주 (0.35%)
	제2-1-2호	보통	사내이사 안성훈 선임의 건	가결	9,311,741주	5,988,321주	5,958,478주 (99.50%)	29,843주 (0.50%)
	제2-2-1호	보통	사외이사 안영률 선임의 건	가결	9,311,741주	5,988,321주	5,905,274주 (98.61%)	83,047주 (1.39%)
	제2-2-2호	보통	사외이사 정덕균 선임의 건	가결	9,311,741주	5,988,321주	5,988,321주 (100.00%)	-
	제2-2-3호	보통	사외이사 윤여선 선임의 건	가결	9,311,741주	5,988,321주	5,988,321주 (100.00%)	-
제3호 의안	제3-1호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연성 선임의 건	가결	5,329,375주	2,005,955주	1,922,908주 (95.86%)	83,047주 (4.14%)
제4호 의안	제4-1호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안영률 선임의 건	가결	5,329,375주	2,005,955주	1,922,908주 (95.86%)	83,047주 (4.14%)
	제4-2호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정덕균 선임의 건	가결	5,329,375주	2,005,955주	2,005,955주 (100.00%)	-
제5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9,311,741주	5,988,321주	5,586,130주 (93.28%)	402,191주 (6.72%)	

정기		제 5기 주주총회				2023.03.16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sup>1)</sup> (①)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sup>2)</sup> (A)	찬성 주식수 (B) <sup>3)</sup>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sup>4)</sup> (비율, %)
제1호 의안	보통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9,311,741주	6,389,460주	6,305,498주 (98.69%)	83,962주 (1.28%)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9,311,741주	6,389,460주	6,389,460주 (100.00%)	-

정기		제 5기 주주총회				2023.03.16	
안건	결의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sup>1)</sup> (①)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sup>2)</sup> (A)	찬성 주식수 (B) <sup>3)</sup>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sup>4)</sup> (비율, %)	
						-	
제3호 의안	제3-1호	보통	사내이사 요코타 타케시 선임의 건	가결	9,311,741주	6,389,460주	6,334,433주 (99.14%)
							55,027주 (0.86%)
	제3-2호	보통	사외이사 최윤수 선임의 건	가결			6,270,264주 (98.13%)
						119,196주 (1.87%)	
제4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9,311,741주	6,389,460주	6,240,620주 (97.67%)	
						148,426주 (2.32%)	

1)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2)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3) 찬성 주식수 비율(%) = (B/A) × 100

4)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 100

당사의 제4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위임장 제출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총 93명이며 그 주식수는 5,988,321주로, 당사의 총 발행 주식수 9,324,548주에서 자사주 12,807주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인 9,311,741주의 64.31%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5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위임장 제출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총 108명이며 그 주식수는 6,463,406주로, 당사의 총 발행 주식수 9,324,548주에서 자사주 12,807주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인 9,311,741주의 69.41%에 해당합니다.

#### 나.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조치한 사항

당사는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 개최되었던 정기주주총회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 이외의 날에 개최함으로써 주주의 참석 및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정관에 서면투표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 및 참석률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권유자인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시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도록 권유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권유 문서 등의 내용을 권유 행위 2영업일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주주의 권리 보장을 적극 검토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 주주총회 시 주주의 의견 제안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주주제안권 전반에 관한 사항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서 규정하는 당사의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사업의 내용, 안건, 기타 요청사항 등 주제의 제한을 두지 않고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 개최되었던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별도의 주주제안이 없었으며, 상기 기간 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주주제안 내역

제안 일자	제안 주체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반대율(%)
해당사항 없음						

####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 제출 내역

발송 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회신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음				

## 나.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

당사는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함을 회사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사내 기준 및 절차 수립 등을 검토하여 주주와 당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4) 회사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가.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및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당 정책을 바탕으로, 경기에 따른 현금흐름 변화(자회사 실적 포함), 동종업계의 배당성향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정액 기준의 배당 목표를 수립한 뒤, 사업연도 종료 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투자, 재무구조, 시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실시하여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나.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 정보 안내에 관한 사항

현재는 주주환원정책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예측 불확실성 등으로 중장기적 배당정책을 주주에게 안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투자확대를 통한 현금흐름 개선 등을 통해 배당을 실시하여 당사의 배당 계획 및 실시 사항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당 결정 시 관련 정보는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주주대상 현물배당 통지서 서면발송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의 배당 계획 및 실시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 (5) 회사의 배당 현황

###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가.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2018년 6월 회사분할 이후 제5기(2022년)까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신사업 진출 및 핵심사업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을 실시 및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 내역

(주, 원, %)

사업 연도	결산 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액면가	주당 배당금	총 배당금	시가 배당률	배당성향	
								연결 기준	개별 기준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현재까지 차등 배당, 분기/중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한 조치사항

당사는 주주친화정책 강화를 위해 연간 1회로 집중된 결산 배당을 분산시켜 배당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주주들의 실질 배당수익률을 제고하고자, 상법 제462조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였습니다. 중간배당은 각 사업연도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되, 기준일 이후 45일 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배당을 실시하게 될 경우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겠으며, 주주 요청 시 중간 배당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 (1) 주식발행 및 주주와의 의사소통 현황

####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가.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총 주식수는 200,000,000주(1주당 금액 5,000원)입니다.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는 총 9,324,548주이며, 이 중 자기주식 12,807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9,311,741주입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식발행 현황

구분	발행가능주식수	발행주식수	발행비율	비고
보통주	150,000,000	9,324,548	6.22%	자기주식 12,807주 포함
종류주 우선주	50,000,000	-	-	-

※ 발행가능주식수 : 기준일 현재 수권주식수(정관상의 주식수)

※ 발행주식수 : 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기준일 현재까지 감소(감자, 이익소각 등)한 주식의 총수

※ 발행비율 : 발행주식수/발행가능주식수 \* 100(소수점 3 자리에서 반올림)

#### 나.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는지 여부

당사는 별도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적이 없으며, 모든 주주는 보유 주식의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 다. 주주와의 의사소통에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매년 3월, 5월, 8월, 11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내·아시아 지역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NDR(Non-Deal Road show)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가 개최하는 컨퍼런스 참가 및 방문 투자자 미팅, 컨퍼런스콜, 야드 투어 등 수시 IR 및 미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최고경영진이 직접 투자자와 미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IR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그룹차원의 Conference, 기술세미나, CEO 간담회 등을 각 연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 진행된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현황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비고
2022.02.07~08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1년 4분기 실적 및 사업계획	NDR
2022.05.03~04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2년 1분기 실적 및 사업계획	NDR
2022.08.02~04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2년 2분기 실적 및 사업계획	NDR
2022.11.01~04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2년 3분기 실적 및 사업계획	NDR
2023.02.02~03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2년 4분기 실적 및 사업계획	NDR
2023.05.02~04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3년 1분기 실적 및 사업계획	NDR

※ 당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 소액주주와의 대화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 및 중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회사 정보 및 재무 정보, 주가 정보 및 분기/연간 실적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부터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이용하여 영문 공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 당사의 영문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문공시 현황

공시일자	공시 제목	주요 내용
2022.01.28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2021년 4분기 영업(잠정)실적 공시
2022.01.28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15% 이상 변동
2022.01.28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안내

### 영문공시 현황

공시일자	공시 제목	주요 내용
2022.03.02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2022.03.23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제4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2022.03.23	Notice on Change of CEO	신규 대표이사 선임
2022.03.31	Material Business Matters Related to Investment Decisions	남아프리카공화국 ESS 프로젝트 LOA 수령
2022.04.06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아파트 및 문화체육시설 공사도급계약 체결
2022.04.06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2022.04.20	Terminat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아파트 신축 공사도급계약 해지
2022.05.04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2022년 1분기 영업(잠정)실적 공시
2022.05.04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안내
2022.05.10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남아프리카공화국 ESS 프로젝트 계약 체결
2022.05.19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2022.05.19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2022.06.13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2022.06.20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2022.06.28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공동주택 공사도급계약 금액 및 기간 변경
2022.07.06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공동주택 공사도급계약 체결
2022.07.06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주택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 체결
2022.07.18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산업단지 조성 공사도급계약 체결
2022.07.22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2022.08.02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2022년 2분기 영업(잠정)실적 공시

### 영문공시 현황

공시일자	공시 제목	주요 내용
2022.08.02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안내
2022.08.16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2022.09.08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에티오피아 남부 국가전력망 확충사업 계약 체결
2022.10.05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2022.10.05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 체결
2022.10.31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2022년 3분기 영업(잠정)실적 공시
2022.10.31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안내
2022.11.10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2022.12.13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밀양시 부북 ESS 설치 계약 체결
2022.12.20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주상복합 공사도급계약 체결
2022.12.30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주상복합 공사도급계약 체결
2023.02.01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2022년 4분기 영업(잠정)실적 공시
2023.02.01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15% 이상 변동
2023.02.01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안내
2023.02.24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2023.03.10	Submission of Audit Report	감사보고서 제출
2023.03.13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2023.03.16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오피스 공사도급계약 체결
2023.03.17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제5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2023.03.31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에게 충분한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영업실적 공시 외에도 회사의 주요한 사업계획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모든 주주에게 당사의 경영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 당사의 공정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 제목	주요 내용
2022.01.26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년 4분기 잠정실적 공표
2022.04.29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2년 1분기 잠정실적 공표
2022.07.29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2년 2분기 잠정실적 공표
2022.10.28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2년 3분기 잠정실적 공표
2023.01.31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2년 4분기 잠정실적 공표
2023.04.28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3년 1분기 잠정실적 공표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 벌점	제재금	지정 후 개선노력 등
해당사항 없음					

#### 라. 기업정보를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의 기업정보는 회사 홈페이지(<http://www.hyosungheavyindustries.com/>)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 등 공시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앞서 설명한 공시 및 NDR 외에 높아지는 주주들의 정보 요구 수준에 맞추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IR 자료를 제공하여 주주들의 이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용의 충실성 및 이용 편의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소액주주와의 대화를 별도로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기업지배구조와 IR 담당부서의 연락처, IR정보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고객문의란에 IR관련 문의 부분을 별도로 마련하여 소액주주들이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실적발표회 자료 등을 업로드하여 주주의 정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 내부거래 통제 장치

###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가.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통제장치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거래 및 내부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상법 제39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계법령과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및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여, 이사회 결의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 398조에 따라 당사의 이사 또는 주요주주, 이사 또는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 및 그 자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9에 따라 최대주주인 (주)효성, (주)효성의 특수관계인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1건당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 이상인 경우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고,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 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

당사는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 중 반복되는 동종거래(국내외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및 해외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에 대하여 연간 거래 한도 금액을 정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공정거래법상 국내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는 분기별 거래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 내역**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이사회 의결일	거래 상대방	거래 구분	거래 기간	거래 금액	비고
2022.01.26	공덕개발(주)	자산거래	2022.04.01 ~ 2025.03.31	2,520	-
	(주)신동진	자산거래	2022.04.01 ~ 2025.03.31	170	-
	효성하이드로젠(주)	상품·용역거래(매출)	2022년 연간	260	-
2022.04.29	Hyosung Vina Industrial Machinery Co., Ltd.	지급보증	2022년 연간	64,200	USD 53백만
2022.10.28	(주)효성	상품·용역거래(매출/매입)	2022년 4분기	33,100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내역과 상동
			2023년 연간	143,000	
		자산거래	2023년 연간	15,000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지급보증	2023년 연간	136,800	USD 101백만
	Hyosung T&D INDIA Pvt Ltd	지급보증	2022년 4분기	21,700	USD 16백만
			2023년 연간	75,200	USD 57백만
	HICO America Sales & Tech.	지급보증	2023년 연간	13,000	USD 10백만
	Hyosung HICO, LTD.	지급보증	2022년 4분기	16,200	USD 12백만
			2023년 연간	89,100	USD 66백만
	Hyosung Vina Industrial Machinery Co., Ltd.	지급보증	2023년 연간	71,300	USD 53백만
	효성하이드로젠(주)	지급보증	2022년 4분기	22,000	-
	효성굿스프링스(주)	상품·용역거래(매출/매입)	2023년 연간	32,000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내역과 상동
	효성아이티엑스(주)	상품·용역거래(매출/매입)	2022년 연간	17,200	-
			2023년 연간	13,000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상품·용역거래(매입)	2023년 연간	200	-
	갤럭시아머니트리(주)	상품·용역거래(매입)	2023년 연간	1,700	-
	(주)에프엠케이	상품·용역거래(매출)	2023년 연간	1,100	-
	효성티앤에스(주)	상품·용역거래(매출/매입)	2023년 연간	700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	상품·용역거래(매입)	2023년 연간	100	-
	Hyosung T&D INDIA Pvt Ltd	상품·용역거래(매출/매입)	2023년 연간	29,300	-
Hyosung Vina Industrial Machinery Co., Ltd.	상품·용역거래(매출/매입)	2023년 연간	65,400	-	
Hyosung HICO, LTD.	상품·용역거래(매출)	2023년 연간	4,800	-	

	HICO America Sales & Tech.	상품·용역거래(매출/매입)	2023년 연간	123,800	-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상품·용역거래(매출/매입)	2023년 연간	93,000	-
	Hyosung South Africa (PTY) LTD.	상품·용역거래(매출/매입)	2023년 연간	76,800	-
	Hyosung Holdings USA, Inc.	상품·용역거래(매입)	2023년 연간	900	-
	Hyosung Mexico S. de R.L. de C.V	상품·용역거래(매입)	2023년 연간	400	-
	PT. HYOSUNG JAKARTA	상품·용역거래(매입)	2023년 연간	100	-
	Hyosung RUS.	상품·용역거래(매입)	2023년 연간	300	-

※ 해외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 거래 금액은 비고의 외화 금액을 이사회 결의일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하였습니다.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 내역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이사회 의결일	거래 상대방	거래 구분	거래 기간	거래 금액	비고
2022.01.26	그랜드제오차(유)	자금거래 (대여금 만기연장)	2022.03.01 ~ 2023.02.28	30,500	-
	그랜드제육차(유)			20,900	
	그랜드제칠차(유)			79,800	
	베스트퍼플(유)			52,500	
	베스트레드(유)			52,400	
	베스트블루(유)			41,800	
	그린파워제오차(유)			11,500	
	프로베스트킹덤제일차(유)			46,100	
2022.04.29	효성화학(주)	상품·용역거래(매출)	2022년 2분기	15,500	-
2022.10.28	그랜드제오차(유)	자금거래 (대여금 만기연장)	2023.03.01 ~ 2024.02.28	30,500	-
	그랜드제육차(유)			20,900	
	그랜드제칠차(유)			79,800	
	베스트퍼플(유)			52,500	
	베스트레드(유)			52,400	
	베스트블루(유)			41,800	
	그린파워제오차(유)			11,500	
	프로베스트킹덤제일차(유)			46,100	
	(주)효성	상품·용역거래(매출/매입)	2022년 4분기	33,100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의결 내역과 상동
			2023년 1분기	33,000	
			2023년 2분기	36,000	
			2023년 3분기	38,000	
			2023년 4분기	36,000	
	효성굿스프링스(주)	상품·용역거래(매출/매입)	2023년 1분기	8,000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의결 내역과 상동
			2023년 2분기	8,000	
2023년 3분기			8,000		

			2023년 4분기	8,000	
--	--	--	-----------	-------	--

#### 다.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2022년도 중 상기의 내부거래 통제장치에 따라 진행된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보증 및 담보 내역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대상자	관계	채권자	채무내용	채무보증 및 담보	거래 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Ltd.		수출입은행 외	운영자금	채무보증	129,561	-	654	128,907
Hyosung T&D India Private Limited		신한은행 외	시설자금외	채무보증	79,536	-	1,363	78,173
Green Plan Energy Limited		우리은행	운영자금	채무보증	1,906	1,364	-	3,270
Hyosung HICO, Ltd		하나은행 외	운영자금외	채무보증	148,188	22,898	-	171,086
HICO America Sales & Technology Inc.		우리은행	운영자금	채무보증	9,484	654	-	10,138
Hyosung Vina Industrial Machinery Co., Ltd.		하나은행 외	시설자금외	채무보증	-	55,761	-	55,761
순천에코그린㈜	기타 특수관계자	기업은행 외	운영자금	채무보증	48,391	-	-	48,391
옥산오창고속도로㈜		하나금융투자 외	운영자금	채무보증	5,100	-	-	5,100
			지분증권	담보	14,970	-	-	14,970
합 계					437,136	80,677	2,017	515,796

※ 당기말 당사는 순천에코그린 차입금에 대해 자금보충(3,000백만), 계약이행보증(45,391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잔액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사명	매출채권	기타채권 등 <sup>1)</sup>	매입채무	기타채무 등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효성	-	5,808	3,068	33,684
종속기업	그랜드제오차(유)	-	30,532	-	-
	그랜드제육차(유)	-	20,874	-	-
	그랜드제철차(유)	-	79,753	-	-
	그린파워제오차(유)	-	11,483	-	-
	베스트레드(유)	-	52,391	-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잔액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사명	매출채권	기타채권 등 <sup>1)</sup>	매입채무	기타채무 등
	베스트블루(유)	-	41,830	-	-
	베스트퍼플(유)	-	52,460	-	-
	프로베스트킹덤제일차(유)	-	46,100	-	-
	KB와이즈스타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호	-	3,000	-	5,163
	진흥기업(주)	-	1,354	-	8,867
	Green Plan Energy Ltd	-	12	-	-
	효성하이드로젠(주)	-	72	-	-
	Hyosung HICO, LTD.	5,495	664	-	78
	HICO America Sales & Tech.	12,268	2	532	22,973
	Hyosung South Africa (PTY) LTD.	-	-	-	70
	HYOSUNG T&D INDIA Pvt Ltd	3,302	138	1,975	113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2,664	45,127	8,498	3,023
	Hyosung Vina Industrial Machinery Co., Ltd.	1,578	68	11,115	-
	소 계	4,315	31,364	15,544	39,329
기타 특수관계자	갤럭시아머니트리(주)	-	-	-	50
	(주)갤럭시아에스엠	12	-	51	1,330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	-	-	13	-
	공덕개발(주)	-	1,998	-	8,824
	더클래스효성(주)	-	-	-	2,400
	(주)세빛섬	-	-	6	-
	순천에코그린	-	13,696	-	-
	(주)신동진	-	137	-	494
	신화인터텍(주)	-	-	-	1,200
	옥산오창고속도로(주)	-	2,580	-	-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	50	-	31
	평창풍력발전(주)	-	-	-	455
	효성굿스프링스(주)	3,753	22	495	19,847
	효성아이티엑스(주)	-	-	2,074	1,594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	-	-	2,400
	효성첨단소재(주)	-	-	-	10,200
	효성티앤씨(주)	277	-	46	8,634
	효성티앤에스(주)	-	1	-	4,800
	효성화학(주)	278	-	-	7,275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8	-	-	-
Hyosung Corporation India Private Limited.	-	111	-	6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잔액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사명	매출채권	기타채권 등 <sup>1)</sup>	매입채무	기타채무 등
	Hyosung DongNai Co,LTD	157	-	-	29
	Hyosung Europe SRL.	-	-	14	18
	Hyosung Holdings USA, Inc.	-	-	-	46
	Hyosung International Trade(Jiaxing) Co., Ltd.	-	-	-	31
	Hyosung Japan Co., Ltd.	2,156	364	381	-
	Hyosung Quang Nam., Ltd	4,240	-	-	-
	Hyosung RUS.	-	-	-	135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4	-	-	-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23	-	-	-
	Hyosung Vietnam Co., Ltd.	16	-	-	-
	PT. HYOSUNG JAKARTA	-	-	-	5
	Hyosung Dong Nai Nylon Co., Ltd.	1,253	-	-	-
	소 계	12,177	18,959	3,080	69,804
	합 계	37,484	410,627	28,268	143,775

1) 기타채권에는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금금 등이, 기타채무에는 미지급금, 예수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에 대한 영업거래 내역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사명	매출 등 <sup>1)</sup>	배당금수익	매입 등 <sup>2)</sup>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효성	435	-	97,470
종속기업	그랜드제오차(유)	1,831	-	-
	그린파워제오차(유)	1,226	-	-
	KB 와이즈스타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 11 호	-	6,040	5,996
	진흥기업(주)	1,818	-	1,514
	Green Plan Energy Ltd	6	-	-
	효성하이드로젠(주)	262	-	-
	Hyosung HICO, LTD.	5,882	-	-
	HICO America Sales & Tech.	68,786	-	2,820
	Hyosung South Africa (PTY) LTD.	-	-	1,202
	HYOSUNG T&D INDIA Pvt Ltd	813	-	20,441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8,731	-	65,762
	Hyosung Vina Industrial Machinery Co., Ltd.	3,757	-	26,391
	소 계	93,112	6,040	124,126
기타	갤럭시아머니트리(주)	-	-	1,538

특수관계자에 대한 영업거래 내역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사명	매출 등 <sup>1)</sup>	배당금수익	매입 등 <sup>2)</sup>
특수관계자	(주)갤럭시아에스엠	131	-	549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	-	-	65
	공덕개발(주)	3	-	254
	더클래스효성(주)	1	-	-
	(주)세빛섬	-	-	50
	(주)신동진	-	-	14
	(주)에프엠케이	75	-	-
	태백풍력발전(주)	2,012	-	-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	-	1
	평창풍력발전(주)	1,826	-	-
	효성굿스프링스(주)	21,017	-	1,322
	효성아이티엑스(주)	193	-	17,078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2	-	-
	효성첨단소재(주)	1,036	-	-
	효성티앤씨(주)	1,269	-	3,372
	효성티앤에스(주)	430	-	21
	효성화학(주)	16,217	-	-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30	-	-
	Hyosung Mexico CITY S.A. de C.V.	-	-	227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9	-	-
	Hyosung Corporation India Private Limited.	-	-	97
	Hyosung DongNai Co,LTD	4,043	-	72,551
	Hyosung Europe SRL.	3	-	205
	Hyosung Holdings USA, Inc.	-	-	559
	Hyosung International Trade(Jiaxing) Co., Ltd.	-	-	990
	Hyosung Japan Co., Ltd.	10,473	-	4,735
	Hyosung Quang Nam., Ltd	7,936	-	-
	Hyosung RUS.	-	-	306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4	-	-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23	-	-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5	-	-
	Hyosung Vietnam Co., Ltd.	170	-	-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	315	-	-	
PT. HYOSUNG JAKARTA	-	-	46	

### 특수관계자에 대한 영업거래 내역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사명	매출 등 <sup>1)</sup>	배당금수익	매입 등 <sup>2)</sup>
	Hyosung Dong Nai Nylon Co., Ltd.	1,343	-	-
	소 계	68,565	-	103,991
	합 계	162,112	6,040	325,587

1) 매출 등에는 매출, 기타수익, 이자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매입 등에는 원재료 매입, 판관비, 기타비용, 유·무형자산 취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2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 공시대상기간 중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1%) 이상인 거래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억원)

거래 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 기간	거래 종류	금액	자산 또는 매출대비 비중
Hyosung Vina Industrial Machinery Co., Ltd. (해외계열회사)	2022.07월 ~ 2023.07월	채무보증	342	1.45%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해외계열회사)	2022.05월 ~ 2023.05월	채무보증	283	1.20%
	2022.11월 ~ 2023.11월		270	1.15%
그랜드제오차(유) 등 발전사업SPC 6개사 (계열회사)	2022.02월 ~ 2023.02월	자금거래 (대여금 만기연장)	3,031	12.86%

- 공시대상기간 중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 총액이 일정 규모(5%) 이상인 거래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억원)

거래 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 기간	거래 종류	금액	자산 또는 매출대비 비중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Ltd. (해외계열회사)	2022년 연간	채무보증	1,380	5.86%
		매입	658	2.79%
		매출	87	0.37%
		합계	2,125	9.02%

### (3)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 방안

#### (세부원칙 2-③)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과정에서 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제522조의3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함을 고지하여 반대주주의 권리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된 내용 및 향후 계획 등

2022년도 중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발생하지 않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 4

## 이사회

### 1) 이사회 기능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1) 이사의 경영 의사결정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가. 이사회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관련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당사 정관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구체적인 심의·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승인 사항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상의 이사회 결의사항 (정관 제31조)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기타 법령, 정관에 의하여 이사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 위원회에서의 위임이 금지된 사항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이사회 결의사항	기업이념의 제정·변경 중요한 업무제휴, 공동사업 전개(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중대한 경영사항 회계방침 변경

구 분	승인 사항
이사회 운영규정상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감사위원회) 회사의 회계와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경영위원회)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일반공모증자, 우리사주발행, 주식예탁증서발행, 등에 의한 신주발행 및 실권주, 단주의 처리 포함)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중요한 회사규정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지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현지법인 등의 설치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본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

#### 나.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 및 의사결정 기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과반수(이사 8인 중 5인 사외이사)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사업연도말 1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를 반기말, 사업연도말 연 2회 보고하도록 규정(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7조)하여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정관 34조에서는 효율적인 회사의 업무수행과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해 관계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경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 동시에, 경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이사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매 분기 결산이사회에서 해당 기간의 경영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2) 최고경영자 승계

###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에게 필요한 경영 역량을 “지속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 Profit Design을 할 수 있는가” 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육성하기 위해 신입 임원 대상으로는 신입 임원교육을, 재직 임원 대상으로는 MBA 동영상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임원 후보자 대상으로는 GMC(Global Management Course) 임원 후보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GMC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 인력 중 임원을 선발하고, 이렇게 선발된 임원은 신입 임원교육 및 MBA 동영상 콘텐츠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는 이렇게 관리되는 임원 중에서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 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상법 제389조, 정관 제28조, 이사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 영역별 다양한 후보군을 선발·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있으며, 복수의 대표이사 체제(각자 대표)로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정관 제29조에 따라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여 최고경영자의 유고 등 비상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한 임원 및 임원 후보자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대상 교육 현황

일시	구분	참석인원	교육내용	비고
2022.2.22 ~ 2.24	사내	20	임원의 역할/책임, 그룹경영이해, 경영역량강화	실시간 비대면 교육
2022.5.17 ~ 12.31	사내	234	그룹 경영방침(브랜드 전략, ESG경영) 및	동영상 콘텐츠

			주요 경영기능 이해 (전략경영, 인사/ 조직관리/ 재무회계/ B2B마케팅/ 생산관리/ DT 전략	
--	--	--	--	--

※ (주)효성 및 효성중공업(주)를 포함한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기준입니다.

### 임원 후보자 대상 교육 현황

일시	구분	참석인원	교육내용	비고
2022.4.22 ~ 9.16	사내	31	주요 경영기능의 이해 (전략경영, 마케팅, 회계,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실시간 비대면 교육

※ (주)효성 및 효성중공업(주)를 포함한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기준입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추가 교육을 진행하고,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준수하는 한 편, 내부 프로세스를 규정화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 등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및 노력하겠습니다.

### (3) 내부통제 정책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가. 내부통제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의 내부통제정책은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인 제도, 행동규범, 내부 통제체계, 주요 업무별 유의사항, 준수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정책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 준법 경영 및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에 대해 준법통제기준, 투자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보안규정, 공시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황 및 정책 환경 등의 대내외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의 준법여부 및 회사경영활동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한편, 전사 또는 조직별 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연 1회 이상 주요 활동 내역 및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을 통하여 당사의 조직 및 사업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준법지원활동을 수행한 결과,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었으며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청탁금지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주요

법률 내용과 범위반 사례 등 윤리교육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준법경영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으로 계약체결 현황 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고, 발견된 주요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피드백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일상적인 준법지원을 위해 상시적인 법률자문업무와 계약서 사전심사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주요 법률 제·개정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적 Risk를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준법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내부통제 관련해서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일반 전산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7조에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동 실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연 2회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보고 및 평가 등을 반영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019년 1월에 개정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내부회계 고도화 TFT 및 내부회계관리 담당 TFT를 신설하여 적극적인 관리 및 통제체계를 운영하며 회사의 투명경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규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시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시담당부서와 사업부서와의 연계성을 통한 적시성 있고 정확한 공시 수행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으며, 내부 전자품의 공통양식 내 거래소 주요 공시사항 및 공시기준을 별도 안내하여 공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관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지주회사인 (주)효성에서 운영하는 효성기업집단 공시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공시자료를 작성 및 검토하여 기재사항 오류 등을 지주사와 Cross Check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및 상장사협의회 등에서 주최하는 수시 및 정기교육에 참석하여 법규정 개정에 따른 공시서식 및 공시의무의 변경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회사 이익창출의 근본이 되는 투자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투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의 계획·집행·관리 및 결과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자본운용을 효율화하고자 투자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 등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급변하는 환율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Case별 환리스크 헷지 방안(선물환 등)을 검토 후 내부적인 원칙·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자산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각종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이사회 구성

###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1) 이사회 의 효과적인 기능과 독립적인 기능 수행현황

####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 가. 이사회 구성 현황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4조에 따라 3명 이상 16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383조 1항에 따른 최소 이사 원수를 반영한 것이고, 최대 인원을 16명으로 구성한 것은 다양한 사업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다수의 이사의 필요성과 이사 간 의견 수렴의 지연 문제 등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절충한 결과입니다.

2023년 5월 31일 현재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 지원부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조직도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라 당사와 같은 자산 2조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3명 이상이되, 그 수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 이사회는 현재 사내이사 3명(대표이사 2명) 및 사외이사 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상법상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며, 감사기능의 강화 및 연속성, 회사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영률, 신연성, 정덕균 사외이사는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전원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법률·회계·기술·마케팅 등 각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며, 대표이사만이 이사회 의장 후보가 되도록 하는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양동기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사외이사에게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회 산하 위원회 개최 전 의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외이사의 경영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별도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31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성별 (만 나이)	직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내 이사	양동기	남 (60세)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경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22.03.17	2024.03.17	전사 경영총괄 (건설/지원부문)	대우건설 부사장
사내 이사	요코타 타케시	남 (65세)	대표이사, 경영위원회 대표위원	2019.03.23	2025.03.16	전사 경영총괄 (중공업 부문)	도시바유립사 사장
사내 이사	안성훈	남 (51세)	경영위원회 위원	2022.03.17	2024.03.17	전력 사업부문 경영총괄	효성중공업 부사장
사외 이사	안영률	남 (66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대표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2018.06.01	2024.03.17	법률 (변호사)	서울서부지법원장
사외 이사	신연성	남 (64세)	감사위원회 대표위원	2018.06.01	2024.03.17	회계, 감사 (공인회계사)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사외 이사	정덕균	남 (64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8.06.01	2024.03.17	전자공학	서울대 공대 석좌교수
사외 이사	윤여선	여 (56세)	-	2022.03.17	2024.03.17	경영학	카이스트 경영대학장
사외 이사	최윤수	남 (56세)	-	2023.03.16	2025.03.16	법률 (변호사)	국가정보원 제2차장

※ 대표이사 2인은 건설과 중공업의 각 사업부문을 총괄하는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 (총 3인) (A)	대표위원	사외이사	신언성	남	-	재무제표 감사, 감사활동 확인 및 승인 등	
	위원	사외이사	안영률	남	B		
	위원	사외이사	정덕균	남	B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3인) (B)	대표위원	사외이사	안영률	남	A	주주총회에서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	사외이사	정덕균	남	A		
	위원	사내이사	양동기	남	C		
경영위원회 (총 3인) (C)	대표위원	사내이사	요코타 타케시	남	-	경영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수행	
	위원	사내이사	양동기	남	B		
	위원	사내이사	안성훈	남	-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상법상 설치가 규정되어 있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가 있고, 그 외에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팀은 이사회 산하조직 전반을, 경영관리팀은 경영위원회를 운영·지원하며, 감사지원팀은 감사위원회 산하에 귀속시켜 각 소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 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및 독립성 제고 여부**

당사 이사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이사회 8명 중 5명이 사외이사(비중 62.5%), 감사위원회 전원이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명 중 2명이 사외이사이며, 사내이사만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매 분기 사외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 간 원활한 의견 조율 등 이사회 운영 효율성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있지 않으며, 선임사외이사 또한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경영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운영 등 미준수 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경영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이사회 구성 현황

###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가. 이사회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관련 전반적인 사항

당사 이사회는 관련 업계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내이사 3명과, 각각 재무·회계, 법률, 기술, 마케팅 분야 전문가인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 전반 및 감사, 리스크 관리 등 다방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8명의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동기 사내이사는 대우건설에서 주택사업본부장, 건축/주택 상품개발 및 외주구매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건축/주택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당사의 대표이사 및 건설 사업부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요코타 타케시 사내이사는 도시바 유럽사 사장으로 근무하며 30여년 간 전력 산업에 종사한 높은 전문지식과 이해도를 갖춘 전문가이며,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 및 중공업 사업부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안성훈 사내이사는 효성그룹에서 장기간 재직하며 전력 사업부문 성장에 기여해 왔으며, 경영전략 및 글로벌 마케팅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전력 사업부 총괄 부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안영률 사외이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및 서울서부지법원장을 거쳐 현재 법률사무소 엘프스의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사법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내부통제 및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덕균 사외이사는 현재 서울대 공대 석좌교수로서 당사의 사업 분야 중 전력설비 제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적합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언성 사외이사는 제18회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감사원 등의 국가 감사기관에 재직한 경력과 회계감사인으로 근무하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회계·재무 전문가/감사위원으로 적합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여선 사외이사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장 및 경영대학 경영공학부장으로 마케팅과 소비자행동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적합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윤수 사외이사는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 국가 감사 및 법률기관 재직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ESG경영 및 글로벌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사 8 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 사유	현재 재직 여부
사내이사	김동우	2018.06.01	-	2022.02.04	사임	퇴직
	요코타 타케시	2019.03.23	2025.03.16	2021.03.18	재선임(연임1회)	재직
				2023.03.16	재선임(연임2회)	
	양동기	2022.03.17	2024.03.17	2022.03.17	최초 선임	재직
안성훈	2022.03.17	2024.03.17	2022.03.17	최초 선임	재직	
사외이사	안영률	2018.06.01	2024.03.17	2022.03.17	재선임(연임2회)	재직
	신언성	2018.06.01	2024.03.17	2022.03.17	재선임(연임2회)	재직
	정덕균	2018.06.01	2024.03.17	2022.03.17	재선임(연임2회)	재직
	윤여선	2022.03.17	2024.03.17	2022.03.17	최초 선임	재직
	최윤수	2023.03.16	2025.03.16	2023.03.16	최초 선임	재직

※ 2021년 3월 18일 개최된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요코타 타케시 사내이사가 재선임(연임1회)되었습니다.

※ 2022년 2월 4일 일신상의 사유로 김동우 사내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 2022년 3월 17일 개최된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양동기, 안성훈 사내이사, 윤여선 사외이사가 최초 선임되었으며, 안영률, 신언성, 정덕균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16일 개최된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요코타 타케시 사내이사가 재선임되었으며, 최윤수 사외이사가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 나.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배경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상기와 같이 당사의 이사회는 경제, 교육, 환경, 기술, 회계, 세무, 법률 등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잡힌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부정책 마련을 통해 이사회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출 수 있는 이사를 지속적으로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에 근거하여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였으며,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윤여선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를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들로 구성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3)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절차

####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구성 및 활동내역

당사는 사내이사 선임의 경우,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사내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성과 비전, 리더십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정 후, 이사회 추천 결의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폭넓게 구축되어 있는 후보군 중에서 실무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사외이사로서의 실질적인 기여 가능성 및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 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등을 유관 부서와의 인터뷰 및 관련 서류의 면밀한 검증 등을 통하여 평가한 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의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의 사외이사와 1인의 사내이사(사외이사 비율 67%)로 구성되며, 후보확정을 위한 위원회 내 토의 시에는 전문성·충실성·독립성·사회적 지명도·청렴도 등의 평가기준과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선임시기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 프로세스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나.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이사 후보와 관련한 정보의 구체성 확인 및 적합성 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주주총회 약 3주 전에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에 각 후보자들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 등을 안내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분·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을 공시함으로써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가 있을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까지 진행되었던 당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 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22.02.24 (주총 21일전)	2022.03.17	사내	양동기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이사회)	
		사내	안성훈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이사회)	
		사외	안영률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	정덕균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	신언성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	윤여선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23.02.23 (주총 21일전)	2023.03.16	사내	요코타 타케시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이사회)	
		사외	최윤수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이사후보 선정 및 이사선임 시 소액주주 의견 반영 여부

ESG모범규준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권고 중이나,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중투표제의 도입에 대해 신중한 고민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소액주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상법 제363조의 2에 따른 주주제안권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는 없었습니다.

### 라.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 분	설 명	비 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 제542조의8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만 운영 중. (사내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미운영)</li> <li>- 사내이사는 이사회에의 추천으로 후보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내이사 추천에는 당사 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되는 바, 사내이사 추천인으로 이사회를 활용하고 있음.</li> </ul>
집중투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에 대해, 정관상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모범규준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권고 중이나,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함.</li> <li>-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주주제안권)를 홈페이지에 안내 중</li> </ul>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 관련된 프로세스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4) 회사 임원 선임 현황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 가. 임원현황

당사의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은 보고서 제출일인 2023년 5월 31일 현재 총 53명입니다. 등기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를 말하며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미등기 임원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필요에 따라 소관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담당 임원을 말하며, 그 현황은 매 분기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현재 당사의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양동기	남	부사장	등기임원	상근	건설 부문 대표이사
요코타 타케시	남	부사장	등기임원	상근	중공업 부문 대표이사, 중공업 PG장
안성훈	남	부사장	등기임원	상근	전력PU 총괄
이만섭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전PU장
이정원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홍보 담당
박남용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PU장
배용배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전력PU 국내영업 총괄
탁정미	여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중공업PG DT 혁신 총괄
박태영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전력PU 글로벌영업 총괄
햇토리 마코토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전력PU 전략기획 담당/중공업PG 중공업브랜딩 담당
석영한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웰링턴사업단장
허윤만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PU 기획 담당
김정배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전력PU 기술기획 담당/전력PU 남아공BESS담당
한상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PU 마케팅 담당
김상구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PU 주택영업 담당
이경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전PU 창원공장장/기전PU 창원공장 저압 담당
박왕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PU 도시정비 서울강남·수도권 담당
박정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미국 효성HICO 관리 담당
이창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재무실장/경영전략실장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허우행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전력PU 창원 변압기 기술개발 담당
김진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전력PU 창원공장장/창원공장관리본부장
힐데브란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유럽R&D센터장
정윤희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전력PU 사업수행 담당
손순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전PU 수소사업 담당
이신희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전략실 임원
연구찬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피츠버그 법인장
최영식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전력PU 한전 및 국내솔루션영업 담당
김정훈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중공업 부문 CSO
전재형	여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지원실 임원
김영규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PU 공사담당/경영전략실 DC TFT 담당
전상익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기전PU 기획관리 담당
이해정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지원실 준법지원 담당
이주은	여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웰링턴사업단 총괄매니저
유밍정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전력PU 창원공장 구동 메커니즘 담당
김병훈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전력PU 창원공장 차단기 개발 담당
남경현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중공업 PG CPSO
조현철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전력PU Marketing & Operation 아시아·중동·미주 담당
정진명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PU 기술담당
전석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부문 CSO
장재성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남통효성변압기유한공사 총경리
조영준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전력PU 민수영업 담당
이철훈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미국 효성HICO 부공장장
박요섭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PU 도시정비 서울강북·지방 담당
김세진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PU 기획설계담당
김상학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효성비나기전법인장
박종호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PU 공공, 토목영업 담당
김정현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Marketing & Operation 유럽·아프리카 담당
유인정	여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전략실 중공업 담당
안영률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신언성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정덕균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윤여선	여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최윤수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 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 침해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정책

당사는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기준을 제시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위해 '윤리강령'과 실천적 세부 지침을 담고 있는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부패 방지 준수규정 수립,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전사 임직원의 윤리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HR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의 직속 기구인 HR 상담실을 통해 임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서부터 성희롱, 횡령, 인사 부정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감사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 현장 업무에서부터 각종 제보에 대한 조사까지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활동 등을 통해 당사는 회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건전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회사의 금품을 횡령, 절취, 사취, 유용,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한 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태만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등 기업가치의 직접적인 훼손 또는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고 등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 성적 평정 및 각종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과거에 횡령·배임 경력이 있는 자는 신규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임원을 영입하는 경우에도 여러 차례의 심층 인터뷰, 평판 조회 등을 통해 해당 후보자가 과거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관련한 이력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등기 임원은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등기 임원의 기업가치 훼손 등의 사안에 대한 판단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당사의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 다. 횡령·배임·불공정거래행위로 확정판결 또는 혐의 있는 자의 임원선임 여부

당사는 과거에 횡령과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현재 횡령·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집행임원제도 도입여부

당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집행임원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 결정 및 감독은 상호연관성이 높아 분리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동일 주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3) 사외이사의 책임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1) 사외이사의 독립성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와 당사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관한 사항

2023년 5월 31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등과의 관계와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사외이사와 당사 간에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재직 중인 사외이사와 회사 등과의 관계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할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최근 3개 연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최근 3개 연도)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안영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신언성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대주회계법인 <sup>1)</sup> (직접관련없음)	없음
정덕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윤여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최윤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 당사는 2020년 4월 신언성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대주회계법인과 법률자문 1건(278만원)의 거래가 있었으나, 해당 사외이사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 나. 장기 재직 사외이사 존재 여부(6년 이상, 계열회사 포함 9년)

2023년 5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당사 사외이사 각각의 재직 기간과 관련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재직 중인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장기재직 여부**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	
	재직기간	6년 초과 장기재직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 장기재직시 그 사유
안영률	60개월	-	60개월	-
신언성	60개월	-	60개월	-
정덕균	60개월	-	60개월	-
윤여선	14개월	-	14개월	-
최윤수	2개월	-	2개월	-

#### 다. 사외이사 선임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고 있으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관계 여부를 검토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후보를 선임함으로써 경영감독 업무를 위한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임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 시부터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선발요건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 선임 시 상법 상의 '사외이사 독립성'에 대한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가. 사외이사 직무수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하여 상법상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법 제542조의 8 및 동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사회 내 위원회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매 분기 외부감사인과의 정례 미팅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덕균 사외이사의 경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총장의 허가 하에 사외이사 겸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당사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외이사 겸직 현황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재직기간	상장여부
안영률 (감사위원)	2018.06.01	2024.03.17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	-	-	-	-
신언성 (감사위원)	2018.06.01	2024.03.17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주)이마트	사외이사	2020.3월~현재	상장(코스피)
정덕균 (감사위원)	2018.06.01	2024.03.17	서울대 공대 석좌교수	(주)와이솔	사외이사	2022.3월~현재	상장(코스닥)
윤여선	2022.03.17	2024.03.17	카이스트 경영대학장	(주)세아베스틸	사외이사	2020.3월~현재	상장(코스피)
최윤수	2023.03.16	2025.03.16	법무법인 울촌 변호사	-	-	-	-

## 나.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 여부

사외이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사회가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에 비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경영진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기에, 사외이사의 위상 및 역할상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를 인지하고 각자의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중 3명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매 분기 감사위원회 개최 시 외부감사인과의 미팅을 통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3) 기업의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가.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운영현황

회사는 이사회 지원부서 등을 통해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 세부내역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의 경영정보 보고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무부서 외 모든 부서가 이사회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외이사 교육을 제공 및 안내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또는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간사(재무실장)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이사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금팀, 감사위원회-감사지원팀, 경영위원회-경영관리팀)를 운영 중이며,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 소개 및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의 사전 보고와 회사 경영정보의 제공 등 기타 직무수행 시 요청사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신규 사외이사에 대해 회사의 사업구조, 경영실적 및 이사회·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사진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기별로 주요 사업의 현황 및 이슈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를 회사 내부적으로 마련한 적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

회사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출석 사외이사 /전체 사외이사	회의 사항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나.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의 충분한 제공 여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전담부서를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요청사항에 관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추가적으로 질의 또는 보완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 시 국내외 경영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사무부서 또는 타부서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들의 요청 및 의견수렴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 (1) 사외이사의 평가

####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 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현재 당사 내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 시 수반되는 책임과 역할, 재임기간 중 담당업무 관련 실적과 이사회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견 개진(참여도), 회의 출석률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직무 수행과 관련한 회사 내부 관리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사외이사의 재선임 시 참석률 및 활동내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직원평가 및 외부평가 등의 평가방법 및 재선임 시 이를 반영하는 절차 및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전문성·기여도·공정성 등의 항목을 고려하는 평가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방안과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포함하는 평가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 적용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2) 사외이사 평가 결과의 수용(보수)

###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88조, 정관 제26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사내 및 사외이사 전체에 대한 보상 규모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별도 보수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 보수내역은 매 사업연도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나. 사외이사의 보수가 평가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는지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책상 사외이사 보상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외부 등을 통한 별도의 평가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따라 사외이사의 보상 역시 평가결과에 연동해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보상을 지급하게 되면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사외이사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 등만을 고려한 자체 보상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당사는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의 참석률, 독립성, 기여도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내부평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의 보수 산정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5) 이사회 운영

###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1) 이사회 개최 및 운영 절차

####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393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매 분기 1회 정기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47조의 3에 따른 주주총회 6주 전 재무제표의 감사위원회 제출 및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승인 안건에 대한 이사회 사전 승인과 3월 정기 주주총회 소집 등을 고려하여 2월 주주총회소집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 주주총회 익일 또는 해당 주에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위한 호선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기적인 이사회 승인 사항의 발생 또는 일정상 정기 이사회 부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제8조에 따라 적어도 개최 1일 전까지는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 시에는 이러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경우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정관 제32조와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진이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 이사회 개최 약 2~14일 전에 각 안건에 대한 사전 보고와 질의 응답을 대면 실시하고, 이사들의 추가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개최일 전까지 성실히 지원하여 이사회 안건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던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및 사전 이사회 소집 통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2023년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차	보고	1. ESG경영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2. 2021년 4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3. 준법지원활동 결과 보고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정기	2022.01.26	2022.01.24	5/5
	결의	1. 2021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3.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4.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승인의 건 5. 2022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의 건	가결				
2차	보고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임시	2022.02.24	2022.02.22	4/4
	결의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2. 지점 설치의 건 3.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4. 사내이사 후보 추천의 건 5. 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3차	결의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2. 대표이사 선임의 건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임시	2022.03.19	2022.03.18	7/7
4차	보고	1. 2022년 1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ESG경영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3. 2022년 1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정기	2022.04.29	2022.04.26	7/7
	결의	1.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2.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5차	보고	1. 2022년 2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ESG경영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3. 2022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 4. 2022년 2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정기	2022.07.29	2022.07.26	7/7
6차	보고	1. 2022년 3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ESG경영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3. 2022년 3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	정기	2022.10.28	2022.10.25	7/7
	결의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및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2년~2023년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7차	보고	1. ESG경영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2. 2022년 4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3. 준법지원활동 결과 보고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정기	2023.01.31	2023.01.28	7/7
	결의	1. 2022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3. 2023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의 건	가결				
8차	보고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임시	2023.02.23	2023.02.21	7/7
	결의	1.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2.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및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3. 사내이사 후보 추천의 건 4.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9차	결의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임시	2023.03.18	2023.03.15	8/8
10차	보고	1. 2023년 1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ESG경영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3. 2023년 1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정기	2023.04.28	2023.04.25	8/8

나. 이사회 정기적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규정 마련 여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법 제393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전에 회의 일정을 정한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지하여 각 이사진이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 개정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현재와 같이 항상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프로세스와 내규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2) 이사회 결의 내역

###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매 이사회 종료 후 각 안건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이사회 안건과 경과 요령,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내 보존하고 있습니다.

### 나. 현재 재직중인 개별 이사의 출석내역 및 안건 찬성률

이사회 결의는 정관 제32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총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 이사의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회,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4회 개최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총 47건의 안건(승인 26건, 보고 21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각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2022년 100%, 2023년 100%이며, 개별 이사의 최근 3년간 출석률 및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 이사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비고
	개최일자	22.01.26	22.02.24	22.03.19	22.04.29	22.07.29	22.10.28	23.01.31	23.02.23	23.03.18	23.04.28	
사내 이사	김동우	출석	미해당	2차 사임								
	요코타 타케시	출석	-									
	양동기	미해당	미해당	출석	1,2차 미선임							
	안성훈	미해당	미해당	출석	1,2차 미선임							
사외 이사	안영률	출석	-									
	신연성	출석	-									
	정덕균	출석	-									
	윤여선	미해당	미해당	출석	1,2차 미선임							
	최윤수	미해당	출석	출석	1-8차 미선임							

### 최근 3년간 개별 이사 출석률 및 찬성률

성명	구분	재직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년 평균	최근 3년			최근 3년 평균	최근 3년		
				2022 (최근년도)	2021	2020		2022 (최근년도)	2021	2020
김동우	사내 이사	2018.06.01 ~ 2022.02.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요코타 타케시		2019.03.23 ~ 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양동기		2022.03.17 ~ 현재	100.0	100.0	-	-	100.0	100.0	-	-
안성훈		2022.03.17 ~ 현재	100.0	100.0	-	-	100.0	100.0	-	-
안영률	사외 이사	2018.06.01 ~ 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연성		2018.06.01 ~ 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덕균		2018.06.01 ~ 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윤여선		2022.03.17 ~ 현재	100.0	100.0	-	-	100.0	100.0	-	-

※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사내이사 김동우는 2022년 2월 4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 사내이사 양동기, 안성훈과 사외이사 윤여선은 제 4기 정기주주총회(2022.03.17)에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 사외이사 최윤수는 제 5기 정기주주총회(2023.03.16)에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 6) 이사회 내 위원회

###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가.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현황, 역할 및 구성 현황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 중에는 이사회 전원이 함께 검토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의 총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의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또한 사외이사를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위원회 외 ESG모범규준에서 권장하는 별도의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목적에 적합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자세한 설치현황, 주요역할 및 구성현황은 동 보고서의 '4. 이사회 - 2) 이사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에는 3명 중 2명이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가 대표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위원회의 경우,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 4에 따라 상임이사(사내이사) 3명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한 명문의 규정 여부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총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임면 등은 이사회 운영규정,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및 출석률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및 위원회별 규정에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출석과 참여 현황 등을 별도로 파악하여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평가에 대하여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나,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나. 위원회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경영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매 분기 정기이사회에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다.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및 출석률에 관한 사항

#### [ 감사위원회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1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3명의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 운영 현황 및 감사 보조조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동 보고서의 '5. 감사기구 - 1)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와 관계 법령 및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해 당사에 적합한 후보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8 제4항에 의거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중 2명의 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대표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선임 안건 상정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및 최근 3년간 개별 이사의 출석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차	2022.02.24	2/2	결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2차	2022.03.19	3/3	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대표위원 선임의 건	가결
3차	2023.02.23	3/3	결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최근 3년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년 평균	최근 3년		
			2022 (최근년도)	2021	2020
사외이사	안영률	100.0	100.0	-	100.0
	정덕균	100.0	100.0	-	100.0
사내이사	김동우	100.0	-	-	100.0
	양동기	100.0	100.0	-	-

※ 사내이사 김동우는 일신상의 사유로 2022년 2월 4일 사임하였습니다.

※ 사내이사 양동기는 2022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 2021년에는 별도로 개최된 동 위원회 내역이 없어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경영위원회 ]

당사는 회사경영 기본 방침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신규사업 및 일정 금액 미만의 투자에 관한 사항 등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정관 제34조 및 제37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 1항 및 제11조 4 등에 따라 이사회 부의가 명시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을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사회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 4에 따라 경영위원회는 상임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 종료 후 경영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인 사내이사 3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최되었던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및 최근 3년간 개별 이사의 출석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차	2022.01.12	2/2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2차	2022.03.19	3/3	결의	대표위원 선임의 건	가결
3차	2022.03.28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4차	2022.04.11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5차	2022.04.11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6차	2022.04.11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7차	2022.04.14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8차	2022.04.21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9차	2022.04.21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10차	2022.04.25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11차	2022.04.25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12차	2022.05.12	3/3	결의	관계회사 업무 관련 건	가결
13차	2022.05.13	3/3	결의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의 건	가결
14차	2022.05.16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15차	2022.05.20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16차	2022.05.20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17차	2022.05.27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18차	2022.06.07	3/3	결의	관계회사 업무 관련 건	가결
19차	2022.06.30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20차	2022.06.30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21차	2022.06.30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22차	2022.07.18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23차	2022.07.18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24차	2022.07.18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25차	2022.07.25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26차	2022.07.27	3/3	결의	관계회사 업무 관련 건	가결
27차	2022.08.10	3/3	결의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의 건	가결
28차	2022.08.26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29차	2022.08.26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30차	2022.08.26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31차	2022.09.16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32차	2022.09.21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33차	2022.09.22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34차	2022.09.23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35차	2022.09.23	3/3	결의	사모사채 발행의 건	가결
36차	2022.09.27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37차	2022.09.27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38차	2022.10.05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39차	2022.10.13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40차	2022.10.18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41차	2022.10.20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42차	2022.10.28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43차	2022.10.31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44차	2022.11.01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45차	2022.11.07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46차	2022.11.08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47차	2022.11.17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48차	2022.11.23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49차	2022.11.23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50차	2022.12.06	3/3	결의	관계회사 업무 관련 건	가결
51차	2023.01.13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52차	2023.02.02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53차	2023.02.22	3/3	결의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승인의 건	가결
54차	2023.02.23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55차	2023.02.28	3/3	결의	관계회사 업무 관련 건	가결
56차	2023.03.18	3/3	결의	대표위원 선임의 건	가결
57차	2023.03.23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58차	2023.03.27	3/3	결의	해외지점업무 관련 건	가결
59차	2023.03.31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60차	2023.04.07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61차	2023.04.07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62차	2023.04.18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63차	2023.04.25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64차	2023.04.25	3/3	결의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65차	2023.04.26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66차	2023.05.08	3/3	결의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 최근 3년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년 평균	최근 3년		
			2022 (최근년도)	2021	2020
사내이사	김동우	100.0	100.0	100.0	100.0
	요코타 타케시	100.0	100.0	100.0	100.0
	양동기	100.0	100.0	-	-
	안성훈	100.0	100.0	-	-

※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사내이사 김동우는 2022년 2월 4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 사내이사 양동기, 안성훈은 2022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 5 감사기구

### 1)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1) 감사위원회의 구성현황 및 독립성/전문성 확보 정책

####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가. 감사위원회의 구성(독립성 및 전문성)

##### - 회계/재무 전문가 현황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1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3명의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은 회계/재무, 법률, 기술 전문가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대표감사위원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합니다. 대표감사위원인 신연성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인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조건을 충족한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또한 다른 감사위원들도 법무·경제·경영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당사의 이사회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대표위원	사외이사	신연성	한국외환은행 상근감사위원(2012.03 ~ 2015.08)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1984.11 ~ 2012.03) 공인회계사(1982년 제18회 취득)	회계/ 재무 전문가
위원	사외이사	안영률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2022.02 ~ 현재) 법무법인 KCL 변호사(2012.02 ~ 2022.02) 서울서부지법원장(1984.09 ~ 2012.02)	-
위원	사외이사	정덕균	-	-

####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정책

상법 제415조의 2 제2항 및 정관 제3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3명의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관련 법령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5조에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안내 및 시행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나. 감사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당사는 2018년 6월 1일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동 직무규정에 근거하여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과 정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을 동 직무규정 제6조 1항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1.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2.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3.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14. 외부감사인의 선정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3항에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와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감사위원회가 업무집행 시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사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감사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 감사위원의 정보 접근성 정도

당사는 감사위원이 회의 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로부터 최소 1일 전 상정 안건을 사전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이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및 제31조에 명문화하였고, 그 외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도록 동 규정 제6조 제4항에 명시하여 감사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감사위원회 개최 및 운영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각 위원이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 위원회 개최 2~14일 전에 각 안건에 대한 사전 보고와 질의 응답을 대면 실시하고, 이들의 추가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개최일 전까지 성실히 지원하여 위원회 안건 심의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지시가 있을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동 규정 제1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설치 현황 및 주요 활동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감사지원팀)를 2018년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모범규준 및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8조에 따라 감사부설기구의 내부감사 인력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8조 및 제20조에 감사부설기구 책임자의 선임 시 감사위원회의 동의 및 2년 이내 이동을 제한함을 규정하고 있고, 내부감사 인력 중 1명 이상은 재무/감사 전문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감사부설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감사부설기구 현황

부서명	직원수	직위	평균 근속연수	주요활동내역
감사지원팀	1명	Performance Leader(PL)	2년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반 활동

또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3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으며,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회사경영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준법지원인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성명	현직	최종학력	선임일	결격요건
이해정	효성중공업(주) 지원실 준법지원팀	Univ. of Iowa 로스쿨	2018년 6월 1일	해당사항 없음

###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부서명	직원수	직위	평균 근속연수	주요활동내역
준법지원팀	3명	팀장 1명 차장 1명 과장 1명,	평균 6년	- 일상적인 준법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법률자문 업무, 계약서 사전심사 및 소송업무 수행 - 임직원 법규준수를 위한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횡령, 금품수수, 문서위조 사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및 법위반 예방 가이드라인 교육 - 공정거래법 등 내부거래 관련 교육

###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당사는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환경의 변화, 법규 제·개정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규 감사위원에 대해 회사의 사업구조, 경영실적 및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감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법규 개정사항이 있을 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위원회가 수시로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육 내용에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교육 일자	교육 실시 주체	참석 인원	주요 교육 내용	비고
2022.09.30	효성중공업(주)	전원참석(3명)	남양주 도농 신축공사 현장 견학 등 사업현장 방문 교육	-

#### 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상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감사위원의 보상을 지급하게 되면 감사위원 활동의 독립성·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감사위원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별도의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 등만을 감안하여 자체 보상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보상 항목은 기본 급여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본 급여 외에 성과급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지급되었던 감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의 보수 현황 및 기타 사외이사 보수와의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보수 지급 금액

구분	인원수	보수 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비고
감사위원회 위원	3	162백만원	54백만원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43백만원	43백만원	-

#### 라. 독립성/전문성 확보 정책

당사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 제36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에 관하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5조에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안내 후에 시행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의 공개

###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가.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

감사위원회는 회계 내부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서류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 및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여부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보고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검토합니다.

한편, 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외부감사인의 동석 하에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대표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대표위원은 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최소 1일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100%이며 구체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내역과 개별이사의 출석내역,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출석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차	2022.01.26	3/3	보고	1. 2021년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결의	1. 감사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체결 2. 감사위원회 부설기구 책임자 임면	가결
2차	2022.02.24	3/3	결의	1. 제4기(2021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감사의 건 2.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의 건 3.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제출의 건	가결
3차	2022.03.19	3/3	결의	1. 대표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
4차	2022.04.29	3/3	보고	1. 2022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	-

###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2. 2022년 감사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결의	1. 감사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체결	가결
5차	2022.07.29	3/3	보고	1. 2022년 2분기 재무제표 보고 2. 2022년 상반기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	-
6차	2022.10.28	3/3	보고	1. 2022년 3분기 재무제표 보고	-
			결의	1. 감사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체결	가결
7차	2022.12.06	3/3	결의	1.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8차	2023.01.31	3/3	보고	1. 2022년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9차	2023.02.23	3/3	결의	1.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의 건 2. 제5기(2022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감사의 건 3.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제출의 건	가결
10차	2023.04.28	3/3	보고	1. 2023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 2. 2023년 감사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
			결의	1. 감사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체결	가결

또한, 당사는 매 감사위원회 종료 후 각 안건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동 의사록에는 이사회 안건, 경과 요령,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내 보존하고 있습니다.

###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비고
	개최일자	22.01.26	22.02.24	22.03.19	22.04.29	22.07.29	22.10.28	22.12.06	23.01.31	23.02.23	23.04.28	
사외	신언성	출석	22.03.17 재선임									
	안영률	출석										
	정덕균	출석										

### 최근 3년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성명	재직기간	출석률		
			최근 3년 평균	최근 3년	
				2022 (최근년도)	2021
사외	신언성	2018.06.01 ~ 현재	100.0	100.0	100.0
	안영률	2018.06.01 ~ 현재	100.0	100.0	100.0
	정덕균	2018.06.01 ~ 현재	100.0	100.0	100.0

## 나. 감사위원회의 성실한 감사업무 수행 여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업무 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경영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당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상기의 일상 감사 및 절차를 기초로 상법 제447조의 4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 이사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활동을 보고하고 주주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 2) 외부감사인

###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정책

####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가 선정해야 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정시, 각 회계법인에 감사 제안 요청서를 발송 후 대면회의 개최를 통해 계약조건(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독립성, 전문성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 및 감사계약을 체결하며, 선정된 외부감사인과 세부 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사업연도 개시 전인 2022년 12월 6일 개최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2023년 사업연도부터 2025년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할 것을 결정하고, 2022년 12월 30일 외부감사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 제12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 후 감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23년 1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2년 11월 21일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평가하였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수령한 후 공시일정 준수를 위한 감사 수행 전략의 구체성과 이행 가능성, 제안 보수의 적정성과 함께 전문성, 신뢰성 및 독립성,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영회계법인이 타사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아 2023.1.1 ~ 2025.12.31(3개 사업연도) 기간의 외부감사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및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6조에 의거하여 감사인의 최소 감사보수(410백만원 이상), 최소 감사시간(4,560시간 이상) 및 최소 감사투입인력(파트너 1명, 매니저 1명 포함 최소 5명 이상)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정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서면 및 대면 미팅을 진행하여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연간 감사 수행 절차를 계획대로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사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동 기간 동안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및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감사인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한영회계법인	2022.02월	해외지사 통합관리	2022.02~	-	-
한영회계법인	2022.07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 (HVDC)	2022.08~	150백만원	-
한영회계법인	2022.11월	BEPS 보고서 제출	2022.11~2022.12	25백만원	-

※ 2022년 2월 체결한 계약은 해외지사 통합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마스터 계약으로, 국가별 세부 계약 체결에 따라 용역보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여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내부 실정에 맞는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외부감사인 선임 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진행에 관하여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향후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적용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맞춰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2)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현황

#### - 주요 협의내용 및 내부감사업무에의 반영 절차

당사는 회사의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5조에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책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자체 업무에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경영진의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 및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ESG모범규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동 회의를 통해 감사계약 및 독립성, 연간 감사일정 등에 대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 이슈에 대해 수시로 의논하기 위해 개인 연락처를 활용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긴밀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의 회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부감사 관련 회의 내역

회차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사외이사 /전체사외이사	회의 사항	비고
1	정기	2022.01.26	3명/3명	21년도 감사 진행경과 보고 및 확인	-
2	정기	2022.04.29	3명/3명	22.1분기 재무제표 검토 진행경과	-
3	정기	2022.07.29	3명/3명	22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 진행경과	-
4	정기	2022.10.28	3명/3명	22.3분기 재무제표 검토 진행경과	-
5	정기	2023.01.31	3명/3명	22년도 감사 진행경과 보고 및 확인	-
6	정기	2023.04.28	3명/3명	23.1분기 재무제표 검토 진행경과	-

외부감사인은 매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핵심감사사항, 분/반기 기말감사 시 위반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평가 등을 매분(반기)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설립된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총 5회 개최하였으며,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수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각각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감사전 재무제표 및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현황**

사업연도	제출자료	기간 내 제출여부	외부감사인명	제출시기
2021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주총 6 주 전)	한영회계법인	2022.01.28
2021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주총 4 주 전)	한영회계법인	2022.02.16
2022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주총 6 주 전)	한영회계법인	2023.02.01
2022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주총 4 주 전)	한영회계법인	2023.02.15

-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또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5조 제4항~제6항에서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항,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역시 동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할 경우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내역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 의사소통 여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긴밀한 관계 유지 및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명문화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와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회계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당사 경영진의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대면회의 및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투명한 감사업무 진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연계활동 등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6

## 기타 주요 사항

### 1) 사회적 책임 및 공헌 활동

효성그룹은 '나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교육과 나눔을 통해 수혜자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기업'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의 3대 과제인 취약계층지원, 문화예술후원, 호국보훈을 중심으로 효성이 펼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지구촌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경영과 투자에 매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효성그룹의 사회공헌 참여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 (1) 취약 계층의 자립과 안정적 생계지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가치의 실천이므로 무엇보다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2013년부터 경영진을 포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효성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및 장애어린이가족 후원, 취약계층 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일자리창출 사회적 기업 후원사업(생산설비 교체, 노후화 IT장비 기증 등), 굿월스토어 지원을 통한 장애/저소득층 일자리창출 및 리사이클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 취약계층 대상 사랑의 쌀/김장김치 활동부터 취약계층 밑반찬 및 생필품 지원, 마포구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후원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후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특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부터 4년 연속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역사회공헌인정제(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을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효성그룹의 사회공헌은 국경을 뛰어 넘습니다. 베트남에서 매년 1천여 명 이상의 주민을 치료하는 해외의료봉사단 효성 미소원정대 파견, 고위험환자 한국 초청 수술, 베트남 산악지역 유치원 건축 지원, 르완다 여자청소년 보건증진을 위한 걸스룸 사업을 비롯하여, 임직원들이 매월 자발적인 급여나눔을 통해 베트남 아동과 결연하여 후원하는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직원의 기부금만큼의 기부금을 매칭그랜트로 출연하여 식수위생, 환경개선 등 베트남 낙후 지역의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 (2) 문화 예술 후원

당사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 활동은 소외계층이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직접 예술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관심과 참여도 활발해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은 지정문화유산 보존 등에 힘쓰고 있는 재단법인 '아름지기'의 창립 멤버이자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당사의 임직원들도 정기적으로 창덕궁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장애 예술가 지원,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지원과 임직원 목소리 기부,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고 있으며, 2021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지킴이 우수기업으로 포상 받았습니다.

## (3) 호국 보훈

당사는 사회공헌 분야 중에서도 특히 국가를 위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흥제 선대회장의 산업보국 창업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효성그룹 최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순국 선열을 기리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묘역 정화, 현충탑 참배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도 이와 같은 창업정신 계승의 일환입니다. 2015년 8월에는 북한의 DMZ 지뢰 매설 도발로 전상을 입은 장병들을 위로하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의 발' 동상 제작을 후원했으며,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와 자매결연을 통해 매년 군부대 발전을 위한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참전용사의 주거 지원을 위한 나라사랑보금자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보훈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호국보훈 어르신들은 나들이, 공연, AI 돌봄 로봇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당사는 사회적 책임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경영가능보고서 발간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문/영문으로 당사 웹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yosungheavyindustries.com/kr/csr/sustainability\\_report.do](http://www.hyosungheavyindustries.com/kr/csr/sustainability_report.do))

## <별첨 1>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 분	핵심 지표	준수 여부 (공시대상 기간)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상세 설명	준수 여부 (직전 공시대상 기간)	
		○	×		○	×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	최근 3년간 주총일 18~21일 전 공고함	○	
	② 전자투표 실시 *		×	전자투표 미도입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		22년 주총집중일(3/24, 30, 31일) 이외 3/16일 개최	○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	보고서 제출일까지 배당 미실시		×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명문화된 승계정책 無, 임원후보자교육프로그램 및 정관 제29조 유고시 선임절차 마련 및 운영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관련 정책 마련 및 운영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나, 사외이사 비중(62.5%)이 큰 바, 독립성 문제 없음		×
	⑧ 집중투표제 채택		×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배제함		×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당사 정관 등에 명시적 규정 없음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사외이사 3인 재직기간 5년, 사외이사 2인 재직기간 각 14개월, 2개월	○	
감사 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		2022년 중 연 1회 교육 진행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감사지원팀 설치·운영 중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대표감사위원 1인 충족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 제4호)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2022년 중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중요회의 출석 및 자료 열람, 조사 등 근거규정 마련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3항)	○	

※ 작성기준 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2023.05.31)입니다.

※ \*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2023.3.16) 기준,

\*\*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2022.1.1 ~ 2022.12.31)내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별첨 2> 기업 내부 규정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 ① 정 관
- ② 이사회 운영규정
- ③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⑤ 준법통제기준
- ⑥ 공시정보 관리규정
- ⑦ 내부회계관리규정
- ⑧ 윤리강령